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356

발의연월일: 2024. 7. 3.

발 의 자 : 임오경 · 서영교 · 한정애

박 정ㆍ이성윤ㆍ이기헌

한민수 · 임미애 · 김용민

김병주 · 김용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성 1인 단독가구가 늘고 있고, 이를 대상으로하는 성범죄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음.

지난 2020년 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로부터 취약하고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은 집단인 미혼여성이며, 여성 청년 1인 가구는 남성 청년 1인 가구에 견줘 주거침입피해를 볼 가능성이 11.22배나 높다고 나타남.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판결로 피고 인의 성명, 나이 및 성범죄 요지 등의 고지대상 정보를 피고인이 거주 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유치원·학교·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시설의 장등(이하 "아동·청소년 가구등"이라 함)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가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 가구등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범죄자 등록정보를 고지하는 대상에 성범죄 피해로부터 가장 취약하고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은 집단인 여성 1인 단독가구가 우편 고지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단독가구를 포함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제3항·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 지정보(이하 이 조에서 "고지정보"라 한다)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 는 읍·면·동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고지한다.
- 1.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 2. 여성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가구
-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 4.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 6.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 8.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읍·면 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하는 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관할구역에 출생신고·입양신고·전입신고가 된 제2항 각 호의 자로서 고지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고지명령을 선고받고 이 법 시행 이후 고지명령이 집행되거나 이 법 시행 당시 고지명령이 진행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이후 고지명령 집행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생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현
략)		행과 같음)
<u> <신 설></u>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4항에 따
		른 고지정보(이하 이 조에서
		"고지정보"라 한다)는 고지대상
		<u>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u>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고지한다.
		1.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2. 여성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가구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
		린이집의 원장
		4.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
		<u>원의 장</u>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u>따른 학교의 장</u>
		6. 읍 • 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
		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u>)</u>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
		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신 설>

<신 설>

② ~ ④ (생 략)

- 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 8.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 시설의 장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제2항각 호의 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읍·면 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하는 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주민자치센터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관할구역에 출생신고·입양신고·전입신고가 된 제2항 각 호의 자로서 고지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반지 못한 자에 대하여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u>⑤</u> ~ <u>⑦</u>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